

21

수소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(법 §66⑥)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고시된 수소전기화물자동차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연장
<input type="radio"/> 취득세 50% 감면	<input type="radio"/> (현행과 같음)
<input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	<input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
□ 개정내용

- 수소전기화물차보급 확대를 위해 감면 3년 연장

【운영상 유의사항】

❖ 수소전기화물자동차와 전기화물자동차 구분 필요

- 「지특법」 제66조제6항의 감면대상은 ①「친환경자동차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②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5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③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한정(24.12월 현재 00사 엑시언트 1종)

⇒ 전기화물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「지특법」 제66조제4항에 따른 감면 적용

□ 적용요령

- 2026. 1. 1. 부터 시행(부칙 §1)